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33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1년 4월 2일
○ 회 부 일 : 2021년 4월 6일

2.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한 것으로 해석되어 운영상 혼선이 발생됨에 따라 감면 결정 통지가 삭제된 사항 및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의 시세 감면에 대한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사항을 반영함(안 제11조).

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현행화함(안 제12조).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감면여부 결정' 및 '통지' 문구가 삭제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9조).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직접 사용 범위 확대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반영함(안 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비용발생 요인 없음).

다. 입법예고: (2021. 1. 28.~2. 17.)결과: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인용 조문 변경 및 지방세 감면 관련 용어 명확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재산세 감면 관련 직접 사용의 범위 확대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주민세를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세세목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면서,

< 지방세법 개정(주민세 과세체계 정비) 내용 >

<table>
<tr><th>당초</th><th>개정</th></tr>
<tr><td>- 균등분(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사실상 5개의 세세목

<table>
<tr><td rowspan="3">균 등 분</td><td>개 인</td></tr>
<tr><td>개인사업자</td></tr>
<tr><td>법 인</td></tr>
<tr><td colspan="2">재 산 분</td></tr>
<tr><td colspan="2">종 업 원 분</td></tr>
</table></td>
<td>- 주민세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3개 세세목)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

<table>
<tr><td>개 인 분</td></tr>
<tr><td>사 업 소 분</td></tr>
<tr><td>종 업 원 분</td></tr>
</table></td></tr>
</table>

- 사업소 등에 부과하던 종전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5개로 구성된 주민세 세세목을 3개로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세 체계를 개편한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주민세 과세체계 정비 주요 내용 >

당 초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內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연면적 330㎡초과 250원/㎡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

개 정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8월)	<좌 동>	
사업소분 (8월)	사업자	◦ 모든 사업자: 기본세액(5만원*) ◦ 연면적 330㎡ 초과: 기본세액+250원/㎡
종업원분	<좌 동>	

「지방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함(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제81조 및 제83조).

1)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개 정 전	개 정 후
제7장 주민세 제3절 재산분	제7장 (종전과 같음) 제3절 사업소분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② ---------- 제1항제1호와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
③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삭 제>

※ 현행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구) 주민세 법인 균등분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구) 주민세 재산분 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안은 주민세 세세목 중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1조제2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되,

- 이로 인하여 종전의 '재산분'에 한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서(「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를 달아 종전의 범위에서 감면을 유지하려는 것임.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1.·2. (생 략)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종업원분--. ----------. 1.·2. (현행과 같음)

나.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내 부동산의 소유자가,

- 환지계획 등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85㎡ 이하)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 주택공급자로서의 재개발사업 시행자 요건(재개발 사업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7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1. ---------- 법 제74조제5항제1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인용조문 개정[시행 2020. 1. 15.] 비교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생략, 별첨)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이하 생략)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생략, 별첨) <신설 2020.1.15>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이하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1. 15.]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제74조 개정 전문 전·후 비교표 별첨

-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개정(시행 2020. 1. 15.〕〔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되, 감면 요건 및 감면율을 조정하여 개정하였음.

구 분	감 면 내 용	개정 전	개정 후
시행자	체비지 또는 보류지	취 100% (§74①)	- (조문정비, §74⑤2)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 75% (§74③1)	취 50% (§74⑤1)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취 75% (§74③2)	취 50% (§74⑤2)

- 한편, 지방세의 감면은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위임 운영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1. 시행)의 위임 없이 제정 이전부터 본 조례에 근거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운영해 온,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 사항을 지속 운영하려는 것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시 부칙에 관련 적용례나 경과규정 미규정

- 해당 사업이 현재까지 종료되지 아니하여 다수의 조합이 유지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본 조례로 취득세 감면 사항을 지속 유지하려는 것임.

* 주택재개발사업 48개, 주거환경개선사업 28개 조합 유지중

- 다만, 본 취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이 개정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인바,

- 재무국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취득세 감면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다.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문구 등 삭제 반영(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 2021.1.1.시행)에서 지방세 '감면여부 결정' 및 '통지' 문구가 삭제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1항)에서는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주의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지방세 감면 신청에 따른 감면의 적용이,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등 운영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여부에 대하여 '조사결정하고'를 '확인하고'로,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를 '안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지방세 감면 통지에 대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보완하려는 것임.

※ 감면신청 확인, 안내 후 감면요건 위반 시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결정·부과처분)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확인----------

현 행	개 정 안
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 ---------- 안내---------. ③·④ (현행과 같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일부개정]

개 정 전	개 정 후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 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종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 결정 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통지	□ 감면 결정 통지 문구 삭제 ○ ‘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지’ 삭제

라. ‘직접사용’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안 제24조)

○ 안 제24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요건 중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확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직접 사용의 범위)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직접 사용의 범위) ----------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4호, 2020. 12. 31, 일부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 건축물 및 주택----------.

※ 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

법	제목	법	제목
§31④,⑥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31의4②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31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36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 임대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반면, 재산세는 감면되지 않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요약 ① 임대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임대주택 건축용 토지분 취득세 포함) 취득세 감면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 ④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취득세 · 재산세 감면

- 시민의 주거안정과 임대주택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건축 중인 임대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마. 기타(부칙)

○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제1조), 적용례(제2조)를 규정하고 있음.

- 부칙 제2조는 본 개정조례안 관련 상위 법령 개정 시행일에 맞추어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는 것임.

일 부 개 정 조 례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

참고자료 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개정 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1. 15.]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개 정 전	개 정 후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 2022년 12월 31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신 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신 설>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

	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